

## 제2장

##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025 대비 법원직 형사소송법강의 / 제1편 서론

##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1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1. 형사소송의 목적

형사소송의 목적은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게 실체진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 2. 이념의 상호관계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헌법상의 기본이념이다. 따라서 실체진실주의도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

## 2 실체진실주의

## 1. 의의

## (1) 실체진실주의의 개념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를 말한다. 실체진실의 발견은 공형벌권의 행사인 형사소송에서 정당한 판결의 전제가 되며 정의의 요청이므로 이는 형사소송의 최고의 목표이며 가장 중요한 지도이념에 해당한다.

## (2) 형식적 진실주의와의 관계

사적자치의 원리가 인정되는 민사소송의 형식적 진실주의와 비교된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는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 등과 같은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처분권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sup>1)</sup>.

## (3) 실체진실주의와 소송구조와의 관계

직권주의든 당사자주의든 실체진실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전제하에서의 방법론상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양자모두 실체진실주의를 추구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

1) 영미법의 arraignment(기소사실인부절차 = plea bargaining 협상제도)도 인정될 수 없다.

## 2.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 (1) 종류

실체적 진실주의는 유죄자 처벌을 의미하는 **적극적 실체진실주의**(“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직권주의에서 강조)와 무죄자 처벌을 의미하는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 당사자주의에서 강조)를 내용으로 하는데 헌법의 적정절차원리와 무죄추정의 원리(in dubio pro reo)를 고려할 때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관련판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즉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할 것이다. 즉 형사피고인으로서의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한 처벌대상이 아니라 절차를 형성·유지하는 절차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향유하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검사에 대하여 "무기대 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절차를 향유할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규정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절차를 어떠한 내용으로 구체화 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입법자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입법자는 형사소송 절차를 규율함에 있어서 형사피고인인 국민을 단순한 처벌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헌법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요소를 무시한 재판절차를 형성할 수 없다는 입법형성의 한계를 가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법에서 소극적 진실주의의 요구를 외면한 채 범인필벌의 요구만을 앞세워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2.12.24. 92헌가8 全員裁判部).

### (2) 실체진실주의의 제도적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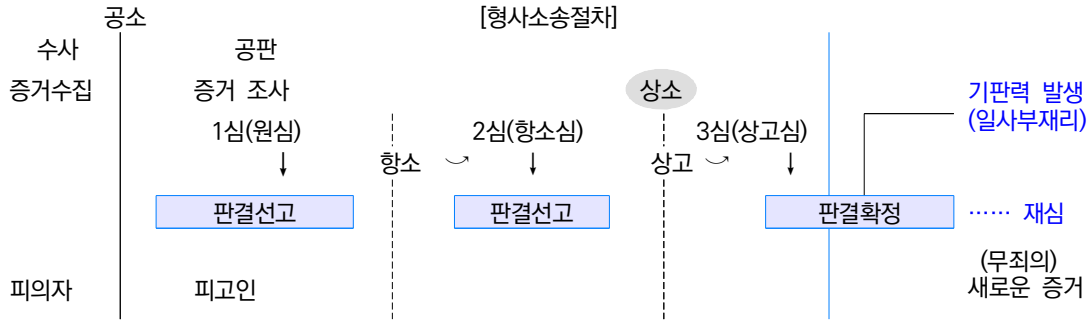
① 수사절차에서의 구현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법의 최고의 지도이념**이며, 형사소송의 모든 단계, 즉 공판절차 뿐 아니라 수사절차(증거수집)에도 적용되는 원리이다.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 ② 공판절차에서의 구현

㉠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에 의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295조). 조문상 재량처럼 규정되어 있지만 실체진실발견의 이념이 최고의 이념임에 비추어 법원의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법원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증거법칙** 실체진실의 발견은 합리적 사실인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증거재판주의** 및 확신의 요구(제307조), 자유심증주의(제308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제308조의2), 자백배제법칙(제309조), 전문법칙(제310조의2), 자백의 보강법칙(제310조) 등이 형소법의 원리로 규정되어 있다.

③ 상소와 재심제도 실체진실주의는 **오판의 시정도** 내용으로 한다. 상소나 재심제도는 이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다만 비상상고는 법령위반을 시정하는 것이므로 실체진실주의와는 무관하다.



### 3.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 (1) 형사소송의 다른 이념에 의한 제약

실체진실주의는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 (2) 사실상의 제약

법판도 사람인 이상 사실의 인정에 있어서는 합리적 의심 없는 고도의 개연성으로 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상의 제약을 받게 된다(제307조 제2항 참조).

#### (3) 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한 제약

군사상·공무상 또는 업무상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압수·수색·검증의 제한(제110조 내지 제112조), 증인거부권(제147조) 및 증언거부권(제148조, 제149조)은 국가안전보장이나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 라는 이익을 실체진실발견이라는 소송법적 이익보다 우위로 인정한 것이다.

## 3 적정절차의 원리

### 1. 서론

#### (1) 의의와 근거

헌법정신을 구현한 공정한 법정절차에 의하여 형벌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은 적정절차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제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 제3장 수사의 종결

2025 대비 법원직 형사소송법강의 / 제3편 수사와 공소

##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1 수사종결의 의의

#### 1. 개념

수사종결이란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을 말한다. 즉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이 명백하게 되었거나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수사를 종결한다. 그러나 수사종결처분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얼마든지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 2. 수사종결권자

수사의 종결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할 수 있다. 즉 경찰이 제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지며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서는 사법경찰관의 사건 불송치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45조의8).

### 2 검사의 제2차적 수사종결권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

- |               |        |              |              |
|---------------|--------|--------------|--------------|
| 1. 공소제기       | 2. 불기소 | 3. 기소중지      | 4. 참고인중지     |
| 5. 공소보류       | 6. 이송  | 7. 소년보호사건 송치 | 8. 가정보호사건 송치 |
| 9.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        |              |              |

#### 1. 공소의 제기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제기는 수사종결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다(구공판 : 제1회 공판기일 열람). 벌금·과료·몰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구약식 : 서면심리하여 재산형 부과).

### 관련판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고 피의자 및 피고인은 수사의 적법성 및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를 닦을 수 있고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03.28. 99두11264).

## 2. 불기소처분의 분류

### (1) 혐의의 불기소처분<sup>1)</sup>

혐의의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처음부터 적법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① **혐의 없음**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2호).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무고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

② **죄가 안 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동 제69조 제3항 제3호).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③ **공소권 없음**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이다(동 제69조 제3항 제4호).

#### ④ 각 하

- ① 피의사건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②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 ③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 ④ 사면이 있는 경우
- ⑤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⑥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 ⑦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 ⑧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 ⑨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⑩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 ⑪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 ⑫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기소유예·기소중지·공소보류는 그 성질상 다른 불기소처분과 경합되는 경우가 없으나 혐의의 불기소처분은 서로 경합하는 경우가 있다. 불기소처분의 사유가 경합한 때에는 논리상의 순서와 판단의 난이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2) 기소유예(起訴猶豫)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된 경우라도 검사가 형법 제51조 각 호(범죄의 연령,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양형사유)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제247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3항 1호). 이를 인정하는 것을 기소편의주의라고 한다.

## (3) 기소중지(起訴中止)<sup>2)</sup>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처분이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기소중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수사의 종료라고 할 수 없고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부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중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재기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사는 피의자가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을 하는 경우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기소중지자에 대한 지명 수배를 할 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5조 제2항). 고소인, 고발인 또는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때에는 참고인증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3. 기타의 처분

### (1) 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제256조).

### (2) 군검찰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256조의2).

### (3) 소년부송치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 3 불기소처분의 효과

### 1. 불기소처분의 효력

(1) 불기소처분의 확정에 의해서 수사가 종결되며 피의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된다.

2) 검사는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국보법 제20조).

## 제2장

## 비상구제절차

2025 대비 법원직 형사소송법강의 /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재판의 집행

## 제1절 재심

## 1 재심의 의의와 구조

## 1. 의의

## (1) 개념

재심(再審)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그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부당함을 시정하는 사후적 비상구제절차이다.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절차인 이상 판결을 집행하기 전은 물론이고 집행중이거나 집행한 후에도 가능하다.

## (2) 취지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사실인정의 과오를 시정함으로써 그 확정판결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은 피고인을 구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 (3) 구별 개념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라는 점에서 미확정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제도인 상소와 구별된다. 그리고 재심은 사실오인을 시정하기위한 비상구제절차인 점에서 법령위반을 이유로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판결의 효력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 비상상고와 구별된다.

## 2. 재심의 대상

## (1)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 및 항소·상고의 기각판결이다.

## (2) 유죄의 확정판결

유죄의 확정판결이어야 하므로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판례). 판결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더라도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판결은 성립하여 존재하며 그것이 유죄 확정판결이라면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관련판례

- [1] 공판정에서는 판결서에 따라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2조). 판결과 판결서는 개념적으로 다르다. 판결의 선고내용과 판결서의 내용이 다르면 선고된 내용에 따라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고, 판결서는 판결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일 뿐 판결서가 판결 그 자체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판결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된 다음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더라도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판결은 성립하여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이 유죄 확정판결이라면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재심 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판결의 등본은 법원사무관 등이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66조, 제28조). 형사사건의 판결서 원본은 국가가 보존할 책임을 진다(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제18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제21조). 판결이 선고되었는데도 국가가 판결서 원본을 보존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이나 재심청구인에게 지울 수는 없다.
- [2] 판결이 위헌·위법 사유로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립한 이상 형식적 확정력은 인정되고, 오히려 그러한 중대한 위헌·위법 상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통한 구제를 긍정하는 것이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바로잡는다는 재심제도의 존재 목적에도 부합한다(대법원(순) 2019.03.21. 2015모2229).

①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이므로 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의 판결 등은 사실오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관련판례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21.04.02. 2020모2071).

② 판결만 재심이 대상이 되므로 판결이 아닌 재판(예컨대 공소기각결정, 항소기각결정)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관련판례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면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항소심의 유죄판결은 이로써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06.27. 2011도7931).

## 관련판례

① [1] 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장래를 향하여 소멸될 뿐이고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죄판결은 형 선고의 효력만 상실된 채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피고인으로서 재심을 통하여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불이익, 즉 유죄의 선고는 물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경력 자체 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무고하고 죄 없는 피고인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만일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판결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특별사면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청구권을 박탈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형사보상을 받을 기회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재심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면소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이 있는 때'에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사면을 의미할 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특별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소) 2015.05.21. 2011도1932)

② 법원이 심리한 결과 재심청구의 대상이 약식명령이라고 판단하여 그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검사나 피고인 등이 모두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심개시결정에 의하여 재심이 개시된 대상은 약식명령으로 확정되고, 그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 재심이 개시된 대상을 유죄의 확정판결로 변경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그 재심개시결정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재심을 개시할 수 없는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3.04.11. 2011도10626).

③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형의 선고 및 형의 면제의 선고가 확정된 판결이다. 따라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이 인정된다. 확정판결의 효력이 부여되는 약식명령(제457), 즉결재판(즉심법 제16조),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납부(동법 제7조 제2항)와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납부(동법 제119조 제3항)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도 재심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당연무효의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이 허용된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태도이다.

### (3) 상소기각판결

재심은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도 그 대상으로 한다(제421조).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사유가 없고,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보충적으로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소기각판결 그 자체가 재심에 의하여 배척되면 원판결의 확정력도 배제되어 결국 원판결에 대한 재심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